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기간제 근로자(보건관리자) 채용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개요

| 연번 | 모집분야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무지 |
|----|-------|------|-------------------------|--|
| 1 | 보건관리자 | 1명 | '24.12.20~ '25.07.31 |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처 경영지원팀 (☎ 02-2017-4482) |

- 금회 채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 별도 합숙소가 제공되지 않으며, 근무지는 사업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업무내용

| 직무 | 주요업무 및 직무내용 |
|-------|--|
| 보건관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보건관리 : 보건관리 계획·수립, 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업무, 건강증진활동 및 건강장해 예방관련 업무, 직무스트레스 및 근골격계질환 등 관리 ○ 근로자 작업환경관리 : 사업장 유해인자 파악, 작업환경측정 시행 및 결과 ○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에 따른 업무 등 ○ 기타 심리상담업무 및 본사 보건관리업무 지원 |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구분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
| 공통 | <p>[공통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근무 개시일('24.12.20)로 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p>[특별우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 자격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 1~6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필요분야* 관련 학위 취득자 * 학과 명칭에 '산업보건', '산업위생', '보건환경'이 포함된 경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 1~6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 모집 직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 |
|-----------|--|
| 보건 관리자 |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8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
| <p>「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09.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
|---|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채용금지)

1.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2.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65세) 이상인 자
3.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급여조건

| 구 분 | 급 여 조 건 | | | |
|-------|-------------------------------|-----------|---------|---------|
| 보건관리자 | ○ 월 임금 이백팔십이만구천이백칠십원 (단위 : 원) | | | |
| | 계 | 기본급 | 정기상여금 | 직무수당 |
| | 2,829,270 | 2,339,370 | 389,900 | 100,000 |

○ 그 외의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지침」에 따름

5) 근무조건

| 구 분 | 근 무 조 건 |
|-----|---|
| 공통 |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5일 근무 ○ 근무지 : "1)채용개요" 참조 |

○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름

6) 채용절차



○ 전형방법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서류전형 (1차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가산점(10) <table border="1"> <thead> <tr> <th>계</th> <th>자기 소개</th> <th>지원 동기</th> <th>경험 및 경력</th> <th>특별우대 가산점</th> </tr> </thead> <tbody> <tr> <td>100+가산점</td> <td>30</td> <td>30</td> <td>40</td> <td>5점 / 10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인원 : 채용인원 1인 5배수 - 동 점 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24.12.12(목) 17시 이후 개별통보 | 계 | 자기 소개 | 지원 동기 | 경험 및 경력 | 특별우대 가산점 | 100+가산점 | 30 | 30 | 40 | 5점 / 10점 |
| 계 | 자기 소개 | 지원 동기 | 경험 및 경력 | 특별우대 가산점 | | | | | | | |
| 100+가산점 | 30 | 30 | 40 | 5점 / 10점 | | | | | | | |
| 면접전형 (2차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기준 :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 가산점(10) <table border="1"> <thead> <tr> <th>계</th> <th>의사소통능력</th> <th>문제해결능력</th> <th>조직적응력</th> <th>특별우대 가산점</th> </tr> </thead> <tbody> <tr> <td>100+가산점</td> <td>30점</td> <td>40점</td> <td>30점</td> <td>5점 / 10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인원 :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에 따름(1배수) - 예비합격자 : 모집단위별 3인(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 가산점 부여 시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산점 제외) - 동 점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24.12.18(수) 17시 이후 개별통보 | 계 | 의사소통능력 | 문제해결능력 | 조직적응력 | 특별우대 가산점 | 100+가산점 | 30점 | 40점 | 30점 | 5점 / 10점 |
| 계 | 의사소통능력 | 문제해결능력 | 조직적응력 | 특별우대 가산점 | | | | | | | |
| 100+가산점 | 30점 | 40점 | 30점 | 5점 / 10점 | | | | | | | |

○ 전형별 우대내용

| 직 무 | 우대내용 |
|-----|---|
| 공통 | <p>[특별우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p>※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부여</p> |

7) 지원서 접수 등

○ 접수기간 : '24. 11.22(금) 09시 ~' 24. 12.06(금) 12시

○ 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인터넷(온라인) 접수

* 접속경로 : LH홈페이지 > 새소식 > 채용정보 > 비정규직 채용광고)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면접 당일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접전형 시 제출(지참) 서류

| 구분 | 제출대상 | 제출서류 |
|----|---------------|---|
| 공통 | 신분증(필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부 (진위 확인을 위한 원본 지참) |
| | 특별우대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8) 블라인드 채용 및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위반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제출 서류는 자격 및 우대요건 등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등의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1개월 이내 퇴사 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예비 합격자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채용의 불합격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 (0503-6994-3747) 또는 이메일(part9@lh.or.kr)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처리안내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이의제기 처리 예외 사유]
 -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상관없는 채용제도, 절차 등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2) 응시자 정보, 출제위원·평가위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3) 그 밖에 상기에 준하는 사항

-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부정 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재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에 탈락한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 * 다만, 동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자가 公社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청구방법 : 붙임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본인 서명 및 날인하여 E-mail(part9@lh.or.kr)로 신청
- 청구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 ‘24.12.18(수)로부터 1개월 간
- 기타사항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서류는 E-mail 수신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소요비용은 公社가 부담)되며,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10) 문의 및 서류제출

- (직무관련) 담당자(상기 “1) 채용개요” 연락처 참조)
- (채용담당) LH서울 경영지원팀 담당자(☎ 02-3496-4105)

2024년 11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직인생략)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원본제출서류의 경우 신청가능>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 주소 | |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 반환청구서류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